

난민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타법 개정사항 반영(안 제13조)

가. 개정 이유

- '25. 3. 18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가 제60조의5로 이동함에 따라 동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「난민법 시행규칙」 제13조 개정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'제60조의4'를 '제60조의5'로 법조 수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해당사항 없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 마련(안 제14조의2, 별지 제21호의2 서식, 제21호의3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난민법 제35조는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구체적 절차 미비
- 난민법 시행령 제16조를 개정하여 난민인정자의 외국이수 학력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서식 신설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「학력인정신청서」(별지 제21호의2서식) 제출
- 법무부장관은 학력인정신청서와 함께 「외국이수학력확인서」(별지 제21호의3서식)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난민인정자가 외국이수 학력을 인정받음에 따라 취업이나 대학 등 상위 교육기관 진학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「난민인정신청서」 생계비 및 의료 지원 안내 강화(별지 제1호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「난민인정신청서」상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,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고 의료 지원에 대한 안내도 없어 보완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「난민인정신청서」에 생계비 및 의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
-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및 의료 지원을 모르는 경우 접수공무원이 안내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난민신청자의 생계비·의료지원 신청권 보장을 통한 처우 향상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「생계비 등 지원신청서」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 추가(별지 제22호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생계비를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목적으로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 등을 은행과 카드사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 신설 필요

※ '26. 10월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전환(일부 현금 지급)

나. 개정 내용

- 「생계비 등 지원신청서」에 난민신청자의 국적, 성명, 생년월일 등 정보를 생계비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란 추가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

- '26. 6. 법무부 - 우리카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업무협약(MOU) 체결

라. 입법 효과

- 난민신청자의 계좌 개설 등을 용이하게 하여 생계비 신청 접근성을 높이고, 지급방식 전환을 통한 생계비 집행 투명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「의료 지원 신청서」 신청인 계좌 기재란 추가(별지 제23호의2서식)

가. 개정 이유

- 「의료 지원 신청서」상 진료기관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 신청인이 이미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사후정산 곤란

나. 개정 내용

- 신청인이 의료비를 진료기관에 선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「의료 지원 신청서」에 신청인의 계좌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의료지원 신청인의 편의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